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83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구자근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19.
3. 회부연월일 : 2024. 7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포함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③·④ (생략)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2조1)에 따르면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하며,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²⁾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³⁾.

최근 4년간(’20년~’23년) 창업기업 동향을 보면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수는 111.2만개로 2020년 104.7만개보다 6.2% 증가하였고, 2023년 비수도권 창업기업 수는 51만개로 2020년 48.7만개보다 4.7% 증가함.

2)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을 말함.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또한 2023년 전체 창업기업 중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비중은 45.9%로 2020년 46.5%에서 0.6%p 감소함.

[표 1] 최근 4년간('20~'23) 창업기업 동향

(단위: 만개,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전체 창업(A)	104.7	110.1	111.2	111.2
비수도권 창업(B)	48.7	49.8	50.6	51.0
비 중(B/A)	46.5	45.2	45.5	45.9

주: 부동산업 제외 수치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을 통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게 되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사한 입법례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⁴⁾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연구개발
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반 및 환경조성
4.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5.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양성
6.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7. 지역중소기업의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등 국제협력 지원
8. 그 밖에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며,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의²⁵⁾는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⁶⁾에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⁷⁾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향후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개정안이 우대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비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을 말하는데,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⁸⁾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역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2조의2(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우대)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인력지원사업을 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우대한다.

6)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 정부는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청년·여성·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역9)의 경우에는 그 외의 수도권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있어 보임.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¹⁰⁾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¹¹⁾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지역을 그 밖의 수도권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

-
- 8) 특수상황지역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포함되는데,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과 민간인통제선 이남(以南)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을 말함.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를 접경지역에 포함함.
- 9)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안전부고시인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제2024-15호, 2024. 2. 27. 시행)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됨.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11)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함.

따라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기대되는 정책효과와 수도권 중 특수상황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우대 지원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창업활성화 사업 중 일부는 지금도 수도권 외 소재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464

[참고자료]

1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TIPS R&D	1,304	팁스*(TIPS) 운영사가 (예비)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2억원을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는 R&D, 창업사업화, 해외 마케팅 등 최대 15억원 (3년간)을 매칭 지원 * TIPS : T ech I ncubator P rogram for S tartup	선정평가시 비수도권 (예비)창업기업에 가점 2점 부여 (가점 만점: 3점)
예비창업패키지	630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 선정시 지역 안배 ·예비: 전국 27개 중 비수도권 17개 ·초기: 전국 20개 중 비수도권 12개 ·도약: 전국 13개 중 비수도권 8개
초기창업패키지	549	유망 초기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을 대상으로 자금, 멘토링,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 * 특화프로그램 예시: 여성 과학기술인 창업컨설팅, 소셜벤처 컨설팅 등	
창업도약패키지	593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대기업 연계 등 도약기 창업프로그램을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	1,000	폐업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여성 창업기업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자 발굴 및 기술창업 지원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46	1인 창조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793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쏠단계를 패키지방식으로 지원	서면평가 가점 1점
재창업자금 (융자)	1,000	폐업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	최대 대출한도 우대 (시설 60억원 → 100억 원, 운전 5억원 → 10억 원), 금리 인하(0.1%p)
예비창업패키지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630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	사내벤처팀(여성팀장) 서면·발표평가 각 1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장애인 창업기업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24. 8월 현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33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 창업자 발굴 및 기술창업 지원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46	1인 창조기업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	입주기업 선정평가 가점 1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 창업기업

사업명	예산 ('24,억원)	지원내용	우대조건 ('24. 8월 현재)
재도전성공패키지	168	사업 경험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재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40% 내외 선발
재창업자금 (융자)	1,000	폐업으로 인해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인에게 정책 자금을 융자	융자금리 고정(2.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